

## ◎병무청고시 제2024-4호

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5월 31일

병무청장

### 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

#### 1. 관련근거

- 「병역법」 제21조의2(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) 및 제36조(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)
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0조의2(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), 제72조(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), 제77조(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) 및 제79조(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)
-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, 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」
  - ※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및 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」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

#### 2. '25년도 지원인력

<표 1> 분야별 배정인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전문연구요원	산업기능요원	승선근무예비역
현역병입영 대상자	6,500	2,300	3,200	1,000

- ※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(보충역) :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
- ※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만 배정

#### 3. '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

##### 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및 인원배정 제한 사항】

- 선정 제외 대상
  - △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
- 인원배정 제한 대상
  - △ '24년 병역지정업체 [지방자치단체 시(세종특별자치시 포함, 이하 같음) · 군 · 구 포함]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
  - △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9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- 선정 제외 및 인원배정 제한 대상
  - △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\* (주 · 부업종 모두 포함,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)

\* 가상자산 업체 :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, 교환, 이전, 보관·관리, 중개·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 (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)

\*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: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체

△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,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

## 【전문연구요원】

### ○ 병역지정업체 선정

△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72조(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) 및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8조(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자연계 연구기관

△ '25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순으로 선정  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는 '25년 상반기 추가 선정

△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

### ○ 인원배정

△ '25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
△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: 1,100명(반도체 분야 100명 포함)

\*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 「병역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‘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’ 선발 인원을 의미함

△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총괄배정 : 993명

\* 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(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,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방병무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)

※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'25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(단, '24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의 필요인원으로 같음)해야 하며, 미신청 업체는 '25년 편입 불가

△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업체별 차등 배정 : 207명

\* 소재·부품·장비 및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우대

△ 대기업, 국(공)립 등·기초연구·정부출연·특정연구·지역혁신·방위산업, 대학부설 등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하나,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편입 가능(대기업은 제외)

## 【산업기능요원】

### ○ 병역지정업체 선정

△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72조(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) 및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0조(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업체

△ '25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

○ 인원배정

△ 배정 기준

- '25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, '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

<표 2>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

순위	1순위	2순위	3순위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성화고 졸업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(기업-학교-학생, 3자 협약)자</li> <li>- 일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마이스터고·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</li> <li>○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1순위 외)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</li> <li>○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,2순위 외</li> </ul>

- \*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: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, 특허청의 발명·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,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,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
- \* 일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 참여자 :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학습병행, 도제식교육 참여자
- \*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
- \* 기술계 대안학교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(한국폴리텍다솜고)
- \* '06년 출생자('25년 19세)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('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'24년 졸업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)은 업체별 1,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
- \*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(이론교육)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('25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)
- \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'25년 중 1학년 학습자, 2·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

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·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

- \*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(대학학력자 제외)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

다만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(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)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(선취업·후진학)한 사람은 편입 가능

#### △ 기간산업체 배정

- <표 2>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

- \* '25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은 '25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(최초 배정이 1·2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·2순위내)

-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

- 3순위 인원은 1·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

△ 방위산업체 : 업체당 최대 4명까지 배정, 다만, <표 2>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·2순위로 배정

△ 농어업 분야 배정 : 후계농업경영인 198명, 후계어업경영인 19명, 농기계수리·운전요원 53명 배정

-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고, 배정인원은 영농·영어정착지역(사업장) 또는 정착예정지역(사업장)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별로 배정[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·영어정착지역(사업장) 또는 정착예정지역(사업장) 주소지가 아닌 타 시·군·구로 편입 불가]

-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병무청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(20%),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(80%)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, 개인평가점수는 400점 이상이어야 함

- \*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도 개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

- \* 동점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, 2순위 순서로 정함

#### 개인별 평가기준 등

①학력 및 영농어교육훈련, ②영농어경력, ③영농어기반, ④가점사항,  
⑤영농어사업계획, ⑥영농어정착의욕, ⑦지자체 종합점수 등

(1순위) ①, ②, ③, ④의 합계 순위

(2순위)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 순차별 점수 순위, 그 외 동점 시 별도 계획 수립

- \*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

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 점수를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로 대체

- 농기계수리·운전요원은 배정비율 및 편입률 등을 고려하여 시·군·구별 최대 1명 배정, 다만, <표 2>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·2순위로 배정

△ 별도 배정

별도 배정은 아래 분야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배정하고,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

\* 단, <표 2>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·2순위로 배정

- <표 2>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·2순위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채용 업체: 전부 배정
  - 기간산업체 중소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배정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이 해당하는 사람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(부 또는 모)이 해당하는 사람
- 중점정책육성분야(기간산업체 중소기업) : 업체별 최대 2명 이내, 최대 300명 배정
  - “저탄소 산업 인증 기업” 및 “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” 또는 “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에서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”에 배정
    - \* 4개의 코드번호 : 26111(메모리), 26112(비메모리), 26129(반도체 소자), 29271(반도체 기계)
  - 신청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'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
- 중견기업 분야 : 업체별 최대 2명 이내,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2% 이내 배정
  - 기간산업체 중견기업 중 중점정책육성분야[저탄소, 소재·부품·장비, 반도체]와 일자리 창출 기업('24. 1월~11월까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2명이상 편입한 업체)에 한정 배정

△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안내

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함

- '25년 부족적성 : “ 화학” , “수송장비정비”
-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내용
  - 기간산업체 : “화학” 적성은 43명, “수송장비정비” 적성은 74명 이내로만 편입허용
    - \* 편입제한 제외 분야 : 방위산업체, 농어업분야, 기능특기자
-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허용 인원 배정 방법
  -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

인

-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, 다만, 내년도 19세자('06년생) 중 다음해('25년도)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면 편입 제한
- \* 연말 인원배정 결과 공지 시 다음해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허용 배정 결과도 함께 공지

## 【승선근무예비역】

### ○ 인원배정

#### △ 신청기준

- 업체별 필요인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20%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  
(소수점이하 숫자는 첫째자리에서 올림)
- 신규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내로 신청
-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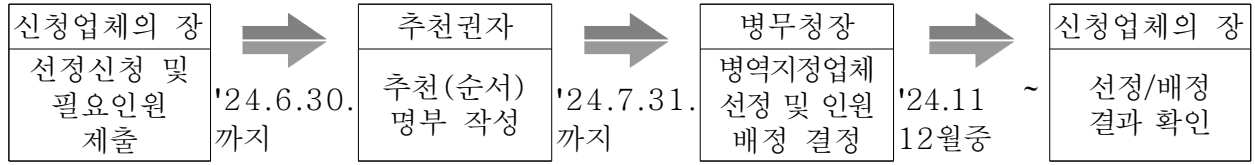
#### △ 배정기준

- '25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해운·수산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  - 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'24년도 해운·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, 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」 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-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을 하고, '24년도 해운·수산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
  - \* 신규 신청하는 업체 중 '24년도에 직무상 사망(실종)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원배정 제외
-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한하여 인원 배정
  - \*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

#### △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

- 연간 배정인원의 10% 범위(100명)
- 별도 배정 대상 : 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」 제4조제3항 업체
  -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
  -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
  - \* '24. 9. 30. 기준 업체별 5년 이내 편입자가 복무 만료한 비율로 정함(5년 이내 편입자가 이동 근무하여 복무 만료한 때에는 최종 업체의 복무만료자로 봄)

## 4.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



**5.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**

**가. 전문연구요원(자연계 연구기관)**

구분	분 야 별	접수기관	추천권자	
박사과정	자연계대학원	한국연구재단	교육부장관	
	과학기술원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기업 등 부설연구기관	대학부설	한국연구재단	교육부장관	
	기업부설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	국(공)립 등			국(공)립
				공공기관
				공익법인
				의료연구
	기초연구			
	정부출연			
	특정연구(과학기술원 제외)			
	지역혁신	산업통상자원부	산업통상자원부장관	
방위산업	국방과학연구소	국방과학연구소장		

**나. 산업기능요원(산업체)**

분야별	업 종	접수기관	추천권자
공 업	철강,기계,전기, 전자,화학,섬유, 신발, 생활용품, 통신기기,정보처리, 시멘트·요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장관(중소기업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중견기업)
	의료의약	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,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대한화장품협회	보건복지부장관
	식품음료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의약품안전처장
	동물약품	한국동물약품협회	농림축산식품부장관
	농산물가공	광역시, 도	농림축산식품부장관
	수산물가공	광역시, 도	해양수산부장관
	임산물가공	산림청	산림청장
해운·수산	게임S/W제작, 영상게임기제작, 애니메이션제작	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,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	문화체육관광부장관
	해 운	한국해운협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	해양수산부장관

분야별	업종	접수기관	추천권자
	수 산	한국원양산업협회, 수협중앙회	해양수산부장관
	광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장관(중소기업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중견기업)
	에너지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장관(중소기업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중견기업)
	건설	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해외건설협회	국토교통부장관
	방위산업체	한국방위산업진흥회	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

※ 해운·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

#### 다. 승선근무예비역(해운·수산업체)

분야별	접수기관	추천기관
해운	한국해운협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	해양수산부장관
수산	한국원양산업협회, 수협중앙회	

#### 6. 유의사항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'24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
- 우선 인원배정 대상 업체라도 전체 지원인력 규모에 따른 업체별 인원배정 상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
-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(사업장)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
- 신규 선정업체는 '25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·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가능

#### 7. 향후 추진일정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: '24년 6월(접수부처·기관 별도공지)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실태조사 : '24년 8 ~ 10월
-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: '24년 11월
  - ※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 : '25년 1월 1일부
- 인원배정 결과 공지 : '24년 12월(병무청 누리집)
  - ※ 실태조사 기간 및 결과 공지는 병무청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